



행정안전부

행 정 안 전 부

 정부혁신
 보다는은 정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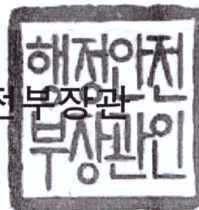
수신 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
 (경유)

제목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책임기술자 제한에 따른 입장 요청에 대한 회신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시험 2019-174(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책임기술자 제한에 따른 입장 요청)호 및 이와 연계된 국민신문고 민원(2BA-1908-266250)과 관련입니다.
3.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.

붙임 : 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질의에 대한 회신. 끝.

행정안전부장관



시설연구관 장성희

시설사무관 김기술

 지진방재정책 전결 2019. 10. 15.
 과장 박광순

협조자

시행 지진방재정책과-2712 (2019. 10. 15.) 접수

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지진방재정책과 (나성동) / <http://www.mois.go.kr>

 전화번호 044-205-5188 팩스번호 044-205-8927 / hymn2joy@korea.kr / 비공개(5)

붙임**[사]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질의에 대한 회신**

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공문(시협 2019-174호)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번호 : 2BA-1908-266250)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2. 귀하의 민원 내용은 “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책임기술자 제한에 따른 입장 요청”로 이해됩니다.
3.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안부의 “기존 공공시설물(건축물)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”(이하 가이드라인)에서는 내진성능평가의 책임구조기술자를 “건축구조기술사”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 - 상기 가이드라인은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에 권장하는 사항이며,
 -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서 교육부 등 해당 시설 소관 부처나 지자체 등 사업 발주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.
 - 참고 사항으로 행안부에서는 내진분야 연구용역을 통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
 - 교육부의 ‘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’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의 ‘기존 시설물(건축물) 내진성능 평가요령’ 개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상의 내진성능평가 책임자격 타당성 여부도 재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4.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진방재정책과 장성희 연구관(044-205-5188)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